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 94 회 사 천 시 의 회 임 시 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 3. 24)

1. 심사 경과

- 가. 2005. 3. 3 : 사천시시장제출
- 나. 2005. 3. 18 :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8호)
-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가. 제안 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농어촌주택사업 관련 조항 삭제
- 2) 인용 법령명칭 및 용어 정비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 한국주택은행 ⇒ 국민은행
- 3) 현행 국민주택 용자제도가 은행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사업이 없어 이와 관련된 조항 정비

다. 관계 법령

-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것임.

○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89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원리금을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던 것을
- 1990년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직접융자해 주고 원리금도 직접 회수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자금의 융자와 회수를 위한 규정이 불필요한 실정인 바 본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은행의 통폐합으로 인한 관련기관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임
- 본 조례를 계속존치 하는 이유는 1989년도 까지 융자해준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므로 융자금이 전액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상환완료 될 때까지는 존치가 필요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조례의 구성 및 체계, 자구의 사용 등 현 규정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있어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